

제 300 회 임시 회
2011. 05. 20.(금)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외 6인

(임헌경, 김도경, 김양희, 박문희, 김재중, 김동환, 이광희)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11년 5월 3일 / 2011년 5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300회 임시회(2011년 5월 20일)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토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헌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기존 정례회의 회의일수의 부족으로 의안 심의시 촉박함을 해소하고 심도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집회일 재조정(안 제4조제2항) :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'11월 20일'을 '11월 15일'로 변경함.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병옥)

-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활동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, 정례회 일정을 앞당겨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제안·심사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1월 20일”을 “11월 15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집회일) ① (생략)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20일</u> 에 집회한다.	제4조(집회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15일</u> 에 집회한다.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